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99호

석문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57호(2022.06.13.) 및 제2022-58호(2022.6.16., 정정)로 산업단지 계획이 변경·고시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계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계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금회 추가사업에 한함”)

- 개발기간 : 2023. 4월 ~ 2023.12.30.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 ※ 지정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은 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구분	기정	변경
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 1차 금속 제조업(C24)	• 1차 금속 제조업(C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전기장비 제조업(C28)	• 전기장비 제조업(C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 신설
	-	• 수상 운송업(H50) - 신설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 신설

주) ()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코드번호임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임대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976,599.1	감)63,280.0	4,913,319.1	100.00	100.00	468,027.8	468,027.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711,660.8	-	711,660.8	14.30	14.48	35,071.0	35,071.0
비금속 광물제품	429,726.3	-	429,726.3	8.63	8.75	75,283.9	75,283.9
1차 금속	413,460.2	-	413,460.2	8.31	8.42	-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224,294.6	-	224,294.6	4.51	4.57	103,454.1	103,454.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45,867.1	-	45,867.1	0.92	0.93	45,867.1	45,867.1
전기장비	73,688.1	-	73,688.1	1.48	1.50	40,014.9	40,014.9
기타 기계 및 장비	751,848.1	-	751,848.1	15.11	15.30	115,311.1	115,31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653,099.4	-	653,099.4	13.12	13.29	53,025.7	53,025.7
복합(1차 금속+금속가공)	405,563.5	감)258,446.9	147,116.6	8.15	2.99	-	-
복합(화학물질+고무제품)	220,751.2	-	220,751.2	4.44	4.49	-	-
복합(1차 금속+전기장비)	179,705.3	-	179,705.3	3.61	3.66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866,934.5	-	866,934.5	17.42	17.65	-	-
복합(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 +수상 운송+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	증)195,166.9	195,166.9	-	3.97	-	-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금회 추가사업에 한함”)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 기정 사업시행자는 변경없음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전체 면적(m ²)			단계별 면적(m ²)						
		기정	변경	증·감	1단계	2단계			3단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총계		12,011,613.4	12,011,613.4	-	5,181,364.6	5,628,198.9	5,628,198.9	-	1,202,049.9	1,202,049.9	-
산업 지 구	소계	10,809,563.5	10,809,563.5	-	5,181,364.6	5,628,198.9	5,628,198.9	-	-	-	-
	산업시설용지	4,976,599.1	4,913,319.1	감) 63,280.0	2,508,570.3	2,468,028.8	2,404,748.8	감) 63,280.0	-	-	-
	일반생산	3,927,978.9	3,669,532.0	감) 258,446.9	1,899,273.5	2,028,705.4	1,770,258.5	감) 258,446.9	-	-	-
	첨단생산	1,048,620.2	1,048,620.2	-	609,296.8	439,323.4	439,323.4	-	-	-	-
	물류시설용지	-	195,166.9	증) 195,166.9	-	-	195,166.9	증) 195,166.9	-	-	-
	지원시설용지	125,561.5	175,588.5	증) 50,027.0	67,601.9	57,959.6	107,986.6	증) 50,027.0	-	-	-
	지원시설	125,561.5	125,561.5	-	67,601.9	57,959.6	57,959.6	-	-	-	-
	유통업무설비	-	50,027.0	증) 50,027.0	-	-	50,027.0	증) 50,027.0	-	-	-
	업무·상업시설용지	184,360.5	184,360.5	-	184,360.5	-	-	-	-	-	-
	체육시설용지	1,133,467.5	1,133,467.5	-	-	1,133,467.5	1,133,467.5	-	-	-	-
	교육연구시설용지	364,834.4	364,834.4	-	364,834.4	-	-	-	-	-	-
	공공시설용지	4,024,740.5	4,037,993.5	증) 13,253.0	2,055,997.5	1,968,743.0	1,981,996.0	증) 13,253.0	-	-	-
	도로	1,852,194.3	1,852,194.3	-	1,225,498.5	626,695.8	626,695.8	-	-	-	-
	공원	371,683.0	371,683.0	-	222,797.3	148,885.7	148,885.7	-	-	-	-
	녹지	791,305.6	791,305.6	-	491,115.1	300,190.5	300,190.5	-	-	-	-
	주차장	65,093.6	65,093.6	-	47,549.1	17,544.5	17,544.5	-	-	-	-
	주유소	11,441.1	11,441.1	-	11,441.1	-	-	-	-	-	-
	폐수종말처리장	31,461.4	31,461.4	-	-	31,461.4	31,461.4	-	-	-	-
	폐기물처리시설	185,354.6	185,354.6	-	-	185,354.6	185,354.6	-	-	-	-
	유수지	637,660.0	637,660.0	-	51,616.8	586,043.2	586,043.2	-	-	-	-
	배수시설	13,591.2	13,591.2	-	-	13,591.2	13,591.2	-	-	-	-
	집단에너지공급설비	49,993.9	49,993.9	-	-	49,993.9	49,993.9	-	-	-	-
	전기공급설비	2,941.7	16,194.7	증) 13,253.0	2,941.7	-	13,253.0	증) 13,253.0	-	-	-
	공공공지	11,951.1	11,951.1	-	2,968.9	8,982.2	8,982.2	-	-	-	-
	오수중계펌프장	69.0	69.0	-	69.0	-	-	-	-	-	-
주거 지 구	소계	1,202,049.9	1,202,049.9	-	-	-	-	-	1,202,049.9	1,202,049.9	-
	주거용지	578,544.8	573,966.3	감) 4,578.5	-	-	-	-	578,544.8	573,966.3	감) 4,578.5
	단독주택	50,303.0	50,303.0	-	-	-	-	-	50,303.0	50,303.0	-
	공동주택	522,485.8	517,907.3	감) 4,578.5	-	-	-	-	522,485.8	517,907.3	감) 4,578.5
	근린생활시설	5,756.0	5,756.0	-	-	-	-	-	5,756.0	5,756.0	-
	상업용지	21,515.2	21,515.2	-	-	-	-	-	21,515.2	21,515.2	-
	공공시설용지	601,989.9	606,568.4	증) 4,578.5	-	-	-	-	601,989.9	606,568.4	증) 4,578.5
	도로	201,388.6	201,794.6	증) 406.0	-	-	-	-	201,388.6	201,794.6	증) 406.0
	공원	229,769.7	229,769.7	-	-	-	-	-	229,769.7	229,769.7	-
	녹지	82,237.7	84,371.3	증) 2,133.6	-	-	-	-	82,237.7	84,371.3	증) 2,133.6
	공공청사	2,520.0	2,520.0	-	-	-	-	-	2,520.0	2,520.0	-
	학교	50,248.7	52,287.6	증) 2,038.9	-	-	-	-	50,248.7	52,287.6	증) 2,038.9
	종교시설	1,760.0	1,760.0	-	-	-	-	-	1,760.0	1,760.0	-
	주차장	7,289.2	7,289.2	-	-	-	-	-	7,289.2	7,289.2	-
	저류지	14,555.0	14,555.0	-	-	-	-	-	14,555.0	14,555.0	-
	배수지	8,064.3	8,064.3	-	-	-	-	-	8,064.3	8,064.3	-
	공공공지	2,895.1	2,895.1	-	-	-	-	-	2,895.1	2,895.1	-
	오수중계펌프장	1,261.6	1,261.6	-	-	-	-	-	1,261.6	1,261.6	-

※ 기정 산업시설용지 2단계 합계면적 고시 오기 정정(2,467,312.2m² → 2,468,028.8m²)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1)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25	80,996	2,170,151	99	38,678	1,066,716	72	33,347	905,190	54	8,971	198,245
	변경	225	80,996	2,170,557	99	38,678	1,066,716	72	33,347	905,190	54	8,971	198,651
광로	기정	1	186	8,549	-	-	-	-	-	-	1	186	8,549
	변경	1	186	8,549	-	-	-	-	-	-	1	186	8,549
대로	기정	43	39,792	1,353,959	6	11,316	475,385	35	26,098	813,482	2	2,378	65,092
	변경	43	39,792	1,354,365	6	11,316	475,385	35	26,098	813,482	2	2,378	65,498
중로	기정	97	29,606	639,776	61	22,539	540,403	19	4,691	69,320	17	2,376	30,053
	변경	97	29,606	639,776	61	22,539	540,403	19	4,691	69,320	17	2,376	30,053
소로	기정	84	11,412	167,867	32	4,823	50,928	18	2,558	22,388	34	4,031	94,551
	변경	84	11,412	167,867	32	4,823	50,928	18	2,558	22,388	34	4,031	94,551

주1) 진입도로 포함(단, 지방도615호선 제외)

주2) 기정 1류 합계면적 고시 오기 정정(1,066,715㎡ → 1,066,716㎡) 및
이에 따른 기정 합계면적 고시 오기 정정(2,170,150㎡ → 2,170,151㎡)

(가) 지구내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21	79,311	2,053,582.9	98	38,480	1,049,822	70	32,046	814,064.9	53	8,785	189,696
	변경	221	79,311	2,053,988.9	98	38,480	1,049,822	70	32,046	814,064.9	53	8,785	190,102
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대로	기정	41	38,910	1,269,490.9	5	11,118	458,491	34	25,414	745,907.9	2	2,378	65,092
	변경	41	38,910	1,269,896.9	5	11,118	458,491	34	25,414	745,907.9	2	2,378	65,498
중로	기정	96	28,989	616,225	61	22,539	540,403	18	4,074	45,769	17	2,376	30,053
	변경	96	28,989	616,225	61	22,539	540,403	18	4,074	45,769	17	2,376	30,053
소로	기정	84	11,412	167,867	32	4,823	50,928	18	2,558	22,388	34	4,031	94,551
	변경	84	11,412	167,867	32	4,823	50,928	18	2,558	22,388	34	4,031	94,551

○ 지구내 도로(산업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지구내 도로(주거지구)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7	33~41	주간선	316	지구북측 구역계 (덩지미골)	대3-2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대로	3	2	25~31	주간선	1,714	대2-37	지구동측 구역계 (지방도615호)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변경	대로	3	2	25~31	주간선	1,714	대2-37	지구동측 구역계 (지방도615호)	일반 도로		'08.06.19	면적변경
기정	중로	1	57	20	보조 간선	830	대2-37	중1-63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58	20~24.5	보조 간선	275	대2-37	중1-57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59	20	보조 간선	533	중1-57	중1-63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0	24.5	보조 간선	368	중1-58	중1-63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1	20	보조 간선	128	중1-57	중1-60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2	20	보조 간선	219	중1-57	중1-59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3	20~24.5	보조 간선	724	대3-2	저류지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4	24.5~29.5	보조 간선	487	대3-2	중1-63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2	16	15	집산 도로	642	대2-37	대2-37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2	17	15	집산 도로	120	중1-57	중1-61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2	18	15	집산 도로	204	중1-57	중1-62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3	16	12	집산 도로	57	대로3-2	지구계 남측구역계	일반 도로		'10.04.07	3단계
기정	중로	3	17	12	집산 도로	125	중로1-64	지구계 동측구역계	일반 도로		'10.04.07	3단계
기정	소로	1	17	10	국지 도로	452	소1-19	소1-19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18	10	국지 도로	70	소1-17	소1-17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19	10	국지 도로	95	중1-57	소1-17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50	소1-17	소1-19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1	10	국지 도로	338	소1-22	소1-22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2	10	국지 도로	94	중1-57	소1-21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3	10	국지 도로	556	소1-24	중1-57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4	10	국지 도로	123	중1-57	소1-23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5	10	국지 도로	118	소1-23	소1-26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6	10	국지 도로	107	소1-24	소1-30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7	10	국지 도로	61	소1-25	소1-30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8	10	국지 도로	61	소1-25	소1-30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9	10	국지 도로	66	소1-25	소1-30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30	10	국지 도로	169	중1-57	소1-23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31	10	국지 도로	36	소1-23	소1-30	일반 도로		'10.03.30	3단계
기정	소로	1	32	10	국지 도로	265	중1-57	소1-32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430	대3-2	제1호 배수지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2	18	8~12	국지 도로	83	대1-59	주거지구 동측경계	일반 도로		'14.11.25	3단계
기정	소로	3	5	3.3~ 12.4	국지 도로	175	대2-37	주거지구 북측경계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6	6	특수 도로	67	중2-16	주거지구 북측경계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7	6	특수 도로	132	중2-16	제79호 완충녹지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8	6	특수 도로	5	소1-17	제75호 경관녹지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9	6	특수 도로	15	소1-17	제75호 경관녹지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10	6	특수 도로	9	중1-58	소1-17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11	6	특수 도로	11	중1-58	소1-17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12	4~6	국지 도로	34	중1-57	제77호 완충녹지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13	6	특수 도로	5	소1-21	제81호 완충녹지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14	6	특수 도로	6	중1-57	소1-21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15	6	특수 도로	6	중1-57	소1-23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16	6	특수 도로	7	중1-59	소1-23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17	6	특수 도로	9	소1-21	제1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18	6	특수 도로	11	소1-21	제1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19	6	특수 도로	10	소1-32	제81호 완충녹지	보행자 전용		'10.03.30	3단계
기정	소로	3	20	6	특수 도로	10	중1-57	소1-32	보행자 전용		'10.03.30	3단계
기정	소로	3	21	6	특수 도로	11	중1-59	소1-23	보행자 전용		'10.03.30	3단계
기정	소로	3	23	6	국지 도로	279	중1-59	중3-17	일반 도로		'10.03.30	3단계
기정	소로	3	24	5	국지 도로	313	중3-16	주거지구 동측경계	일반 도로		'10.03.30	3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5	5~10	국지 도로	319	소3-26	중3-16	일반 도로		'10.03.30	3단계
기정	소로	3	26	6	국지 도로	25	대3-2	주거지구 남측경계	일반 도로		'10.03.30	3단계
기정	소로	3	27	5	국지 도로	431	소3-26	주거지구 서측경계	일반 도로		'10.03.30	3단계
기정	소로	3	28	6	국지 도로	174	대2-37	주거지구 북측경계	일반 도로		'10.03.30	3단계
기정	소로	3	32	6	국지 도로	15	중1-57	주거지구 동측경계	일반 도로		'13.07.18	3단계
기정	소로	3	33	4	국지 도로	78	제94호 완충녹지	제94호 완충녹지	일반 도로		'15.06.11	3단계

(나) 지구외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 게재생략

○ 지구외 진입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녹지(변경)

(가) 녹지 총괄표(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108	873,543.3	증) 1	증) 2,133.6	109	875,676.9
산업지구 소계	81	791,305.6	-	-	81	791,305.6
완충녹지	56	373,971.2	-	-	56	373,971.2
경관녹지	25	417,334.4	-	-	25	417,334.4
주거지구 소계	27	82,237.7	증) 1	증) 2,133.6	28	84,371.3
완충녹지	21	75,128.1	증) 2	증) 3,618.4	23	78,746.5
경관녹지	6	7,109.6	감) 1	감) 1,484.8	5	5,624.8

○ 산업지구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거지구 녹지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구 소계					82,237.7	증) 2,133.6	84,371.3		
기정	71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2014공	830.1	-	830.1	'08.06.19	3단계
기정	72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2016공	727.6	-	727.6	'08.06.19	3단계
기정	73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2019공	2,026.3	-	2,026.3	'08.06.19	3단계
기정	74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2018공	1,917.4	-	1,917.4	'08.06.19	3단계
기정	75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 통정리 2017공	1,222.5	-	1,222.5	'08.06.19	3단계
기정	76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 통정리 2006공	2,014.0	-	2,014.0	'08.06.19	3단계
기정	77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2001공	1,777.2	-	1,777.2	'08.06.19	3단계
기정	78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 통정리 2009공	992.6	-	992.6	'10.03.30	3단계
기정	79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33공 일원	18,257.3	-	18,257.3	'08.06.19	3단계
기정	80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2020공	4,089.7	-	4,089.7	'08.06.19	3단계
기정	81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2022공	2,532.0	-	2,532.0	'08.06.19	3단계
기정	85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 통정리 1960공	1,172.6	-	1,172.6	'08.06.19	3단계
기정	88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 통정리 1990공	223.1	-	223.1	'08.06.19	3단계
기정	89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1989공 일원	3,888.1	-	3,888.1	'08.06.19	3단계
기정	94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1983공 일원	7,461.5	-	7,461.5	'08.06.19	3단계
변경	95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51공	3,866.0	감) 26.2	3,839.8	'08.06.19	
변경	96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50공	1,437.9	감) 26.3	1,411.6	'08.06.19	
변경	97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47공	4,034.1	감) 1,128.2	2,905.9	'08.06.19	
기정	98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48공	4,351.5	-	4,351.5	'08.06.19	3단계
기정	99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46공	985.7	-	985.7	'08.06.19	3단계
폐지	100	녹지	경관녹지	고대면 성산리 1644공	1,484.8	감) 1,484.8	-	'08.06.19	
기정	101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43공	242.5	-	242.5	'08.06.19	3단계
변경	102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38공	5,058.5	감) 1,124.9	3,933.6	'08.06.19	
변경	103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40공	6,363.3	감) 191.7	6,171.6	'08.06.19	
변경	104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34공 일원	3,732.7	증) 1,182.6	4,915.3	'08.06.19	
기정	105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35공	613.2	-	613.2	'08.06.19	3단계
기정	108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2003공	935.5	-	935.5	'08.06.19	3단계
신설	119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27대 일원	-	증) 3,448.3	3,448.3	-	
신설	120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44공	-	증) 1,484.8	1,484.8	-	

다) 공공공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광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용수공급(변경)

가) 용수공급량(변경)

- 기정 : 산업용수 18,000m³/일, 생활용수 26,300m³/일
- 변경 : 산업용수 17,100m³/일, 생활용수 26,300m³/일

나) 공급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우·오수처리(변경)

가) 우수처리(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오·폐수처리(변경)

○ 오·폐수량(변경)

- 기정 : 일평균 26,400m³/일

- 변경 : 일평균 25,900m³/일

○ 처리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 오·폐수처리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우수중계펌프장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폐기물처리(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변경)

가) 시설보호지구(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유통업무설비(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유통업무설비	석문면 통정리 1667장 일원	-	증) 50,027.0	50,027.0	

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공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광장(변경없음, 지구외) : 게재생략

바) 학교시설(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0,248.7	증) 2,038.9	52,287.6	
기정	1	초등학교	석문면 통정리 1732학	12,217.7	-	12,217.7	3단계
기정	2	중학교	석문면 통정리 1731학	12,921.2	-	12,921.2	3단계
변경	3	고등학교	석문면 통정리 1629학	12,979.7	증) 174.6	13,154.3	
기정	4	초등학교	고대면 성산리 1625학	12,130.1	증) 1,864.3	13,994.4	
변경			고대면 성산리 1627대 일원				

주) 기정 시설별 위치 및 면적 고시 오기 정정

- 사) 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 아) 교육 및 연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 자) 공공청사(변경없음) : 게재생략
- 차) 종교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전기공급설비(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941.7	증) 13,253.0	16,194.7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석문면 삼봉리 2129잡	2,685.7	-	2,685.7	1단계
기정	2	전기공급설비	석문면 삼봉리 2128잡	256.0	-	256.0	1단계
신설	3	전기공급설비	석문면 통정리 1620장 일원		증) 13,253.0	13,253.0	

- 타) 에너지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금회 추가사업에 한함”)

가. 추정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 금회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금회 추가사업”으로 사업비 1,420백만원 추가 산정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비고
조성비	1,420	

나. 재원조달계획(변경)

-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활용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

가. 전력수요 추정(변경)

1) 전력수요(변경)

- 기정 : 550 MVA
- 변경 : 518 MVA(감 32 MVA)

■ 기 정

구 분		부지면적 (㎡)	연면적 (㎡)	단위부하 (kWh/㎡·년), (kWh/세대·년)	전력사용량 (MWh/년)	비고
총 계		8,125,654			2,274,310	
산업지구 계		6,862,926			2,399,606	
산업지구	생산시설용지 계	4,976,599.1			2,063,68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711,660.8		601	427,708	
	비금속 광물제품	429,726.3		676	290,495	
	1차 금속	413,460.2		936	386,999	
	금속가공제품	224,294.6		296	66,39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45,867.1		436	19,998	
	전기장비 제조업	89,047.8		412	36,688	
	기타 기계 및 장비	751,848.1		109	81,951	
	자동차 및 트레일러	653,099.4		267	174,378	
	1차금속, 금속가공	405,563.5		616	249,827	
	화학물질, 고무	220,751.2		407.5	89,956	
	1차금속, 전기장비	179,705.3		674	121,1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	851,574.8		-	118,176	
	기타시설용지 계	4,389,037	1,758,960		335,918	
	지원시설용지	125,562	313,904		69,297	
	업무상업시설용지	184,361	977,111	187.2	182,915	
	체육지원시설	37,159	148,636		30,470	
	교육연구시설	364,834	291,868	98.8	28,837	
	폐수종말처리장	31,461	1,573		2,331	
	폐기물처리시설	185,355	3,707		4,141	
	집단에너지공급설비	49,994	4,999		2,321	
	주유소	11,441	17,162		3,248	
	체육시설	1,096,308			2,368	
	배수시설	13,591			1,539	
	도로	1,852,194			7,903	
	주차장	65,094			255	
	공원	371,683			293	
주거지구 계		1,094,298	1,262,728		90,532	
주거지구	단독주택	50,303	75,455	3,895.60	2,209	
	공동주택	522,486	940,474		47,702	
	상업용지	21,515	118,334	195.9	23,182	
	근린생활시설	5,756	17,268	195.9	3,383	
	학교	50,249	100,497	98.8	9,929	
	공공청사	2,520	6,300	154.4	973	
	종교시설	1,760	4,400		416	
	오수중계펌프장	1,262			1,539	
	도로	201,389			991	
	주차장	7,289			28	
	공원	229,770			180	

■ 변경

구 분		부지면적 (㎡)	연면적 (㎡)	단위부하 (kWh/㎡.년), (kWh/세대.년)	전력사용량 (MWh/년)	비고
총 계		7,965,862.7			2,335,863	
산업지구 계		6,707,298.1			2,245,326	
산업지구	생산시설용지 계	4,913,319.1			1,902,88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711,660.8		601	427,708	
	비금속 광물제품	429,726.3		676	290,495	
	1차 금속	413,460.2		936	386,999	
	금속가공제품	224,294.6		296	66,39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45,867.1		436	19,998	
	전기장비 제조업	73,688.1		412	30,359	
	기타기계 및 장비	751,848.1		109	81,951	
	자동차 및 트레일러	653,099.4		267	174,378	
	1차금속, 금속가공	147,116.6		616	90,624	
	화학물질, 고무	220,751.2		407.5	89,956	
	1차금속, 전기장비	179,705.3		674	121,1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	866,934.5		-	118,176	
	복합(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수상운송+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95,166.9		-	4,730	
	기타시설용지 계	4,439,064.0	1,793,979.0		342,440	
	지원시설	125,561.5	313,904.0		69,295	
	업무상업시설용지	184,360.5	977,111.0	187.2	182,915	
	유통업무설비	50,027.0	35,019.0		6,626	
	체육지원시설	37,159.1	148,636.0		30,468	
	교육연구시설	364,834.4	291,868.0	98.8	28,837	
	폐수종말처리장	31,461.4	1,573.0		2,234	
	폐기물처리시설	185,354.6	3,707.0		4,138	
	집단에너지공급설비	49,993.9	4,999.0		2,320	
	주유소	11,441.1	17,162.0		3,247	
	체육시설	1,096,308.4			2,370	
	배수시설	13,591.2			1,537	
	도로	1,852,194.3			7,903	
	주차장	65,093.6			257	
	공원	371,683.0			293	
주거지구 계		1,092,164.2	1,258,564.6		90,537	
주거지구	단독주택	50,303.0	75,454.5	3,895.6	2,209	
	공동주택	517,907.3	932,233.1		47,302	
	상업용지	21,515.2	118,334.0	195.9	23,182	
	근린생활시설	5,756.0	17,268.0	195.9	3,383	
	학교	52,287.6	104,575.0	98.8	10,332	
	공공청사	2,520.0	6,300.0	154.4	973	
	종교시설	1,760.0	4,400.0		416	
	오수중계펌프장	1,261.6			1,537	
	도로	201,794.6			993	
	주차장	7,289.2			29	
	공원	229,769.7			181	

2) 전력공급계획(변경)

○ 사업지구 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하고, 초기공급은 당진변전소에서 공급계획함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전력소요량 (MWh/년)	설비용량 (kVA)	전력소요량 (MWh/년)	설비용량 (kVA)	전력소요량 (MWh/년)	설비용량 (kVA)	
계	2,490,138	551,044	2,335,863	518,012	감) 154,275	감) 33,032	
산업시설용지	2,063,688	430,495	1,902,886	395,904	감) 160,802	감) 34,591	
기타시설용지	426,450	120,549	432,977	122,108	증) 6,527	증) 1,559	

주1) 산업시설설비용량(kVA변압기용량)=최대부하합계(kWh)/1.35(부동률)/0.9(역율)×1.2(변압기손등을 고려한 여유율)

주2) 기타시설설비용량(kVA변압기용량)=수요부하(kVA)/1.3(부동률)

나. 열수요량 추정(변경)

1) 산업시설용지 열부하 산출(변경)

○ 기정

구분		면적(m²)	열원단위 (Mcal/m²년)	직간접열비율(%)		열수요(Gcal/년)		
				직접열	간접열	직접열	간접열	계
산업용지	합 계	4,976,599.1				3,236,354	2,306,620	5,542,97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711,660.8	3,534	34.2	65.8	860,113	1,654,896	2,515,009
	비금속광물제품	429,726.3	3,313	94.5	5.5	1,345,387	78,296	1,423,683
	제1차 금속산업	413,460.2	740	87.4	12.6	267,426	38,534	305,960
	금속가공제품	224,294.6	609	83.2	16.8	113,650	22,945	136,59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45,867.1	245	41.4	58.6	4,651	6,587	11,238
	전기장비 제조업	89,047.8	449	67.3	32.7	26,910	13,072	39,982
	기타 기계 및 장비	751,848.1	106	69.5	30.5	55,411	24,285	79,696
	자동차 및 트레일러	653,099.4	331	49.8	50.2	107,631	108,545	216,176
	1차금속, 금속가공	405,563.5	674.5	85.3	14.7	233,321	40,232	273,553
	화학물질, 고무	220,751.2	1945	31.3	68.7	134,393	294,968	429,361
	1차금속, 전기장비	179,705.3	594.5	77.3	22.7	82,575	24,260	106,8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업	851,574.8	-	100.0	-	4,886	-	4,886

○ 변경

구분		면적(m²)	열원단위 (Mcal/m²년)	직간접열비율(%)		열수요(Gcal/년)		
				직접열	간접열	직접열	간접열	계
산업용지	합 계	4,913,319.1	-			3,083,028	2,278,727	5,361,75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711,660.8	3,534.0	34.2	65.8	860,113	1,654,896	2,515,009
	비금속 광물제품	429,726.3	3,313.0	94.5	5.5	1,345,387	78,296	1,423,683
	제1차 금속산업	413,460.2	740.0	87.4	12.6	267,426	38,534	305,960
	금속가공제품	224,294.6	609.0	83.2	16.8	113,650	22,945	136,59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45,867.1	245.0	41.4	58.6	4,651	6,587	11,238
	전기장비 제조업	73,688.1	449.0	67.3	32.7	22,269	10,817	33,086
	기타 기계 및 장비	751,848.1	106.0	69.5	30.5	55,411	24,285	79,696
	자동차 및 트레일러	653,099.4	331.0	49.8	50.2	107,631	108,545	216,176
	1차금속, 금속가공	147,116.6	674.5	85.3	14.7	84,636	14,594	99,230
	화학물질, 고무	220,751.2	1,945.0	31.3	68.7	134,393	294,968	429,361
	1차금속, 전기장비	179,705.3	594.5	77.3	22.7	82,575	24,260	106,8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업	866,934.5	-	100.0	-	4,886	-	4,886
	복합(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수상운송+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95,166.9	-	-	-	-	-	-

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업은 평택LNG인수기지의 연료원단위를 사용하여 산출함

$$1,540\text{t/h} \times 8,760\text{시간} \times 0.4(\text{가동율}) \times 0.088\text{Nm}^3/\text{t} \times 10,290\text{kcal}/\text{Nm}^3 / 1,000,000 = 4,886\text{Gcal}/\text{년}$$

2) 산업시설용지 간접열 최대부하(변경)

○ 기정

구분		간접열 (Gcal/년)	평균부하 (Gcal/h)	부하율 (%)	최대부하 (Gcal/h)	비 고
산업 용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654,896	218.1	87.5	249.3	
	비금속광물제품	78,296	10.7	75.0	14.3	
	제1차금속산업	38,534	5.2	33.0	15.8	
	금속가공제품	22,945	3.2	33.0	9.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6,587	0.9	33.0	2.7	
	전기장비 제조업	13,072	1.7	33.0	5.2	
	기타기계 및 장비	24,285	3.2	33.0	9.7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8,545	16.1	33.0	48.8	
	1차금속, 금속가공	40,232	5.5	33.0	16.7	
	화학물질, 고무	294,968	40.7	87.5	46.5	
	1차금속, 전기장비	24,260	3.3	33.0	1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	-	-	-	-	
	산업용지 계	2,306,620	308.6		428.7	

○ 변경

구분		간접열 (Gcal/년)	평균부하 (Gcal/h)	부하율 (%)	최대부하 (Gcal/h)	비 고
산업 용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654,896	218.1	87.5	249.3	
	비금속광물제품	78,296	10.7	75.0	14.3	
	제1차금속산업	38,534	5.2	33.0	15.9	
	금속가공제품	22,945	3.2	33.0	9.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6,587	0.9	33.0	2.7	
	전기장비 제조업	10,817	1.4	33.0	4.3	
	기타기계 및 장비	24,285	3.2	33.0	9.8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8,545	16.1	33.0	48.9	
	1차금속, 금속가공	14,594	2.0	33.0	6.1	
	화학물질, 고무	294,968	40.7	87.5	46.5	
	1차금속, 전기장비	24,260	3.3	33.0	9.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	-	-	-	-	
	복합(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수상운송+창고 및 운송관련)	-	-	-	-	
	산업용지 계	2,278,727	304.8	-	417.3	

3) 기타시설용지 열수요(변경)

○ 기정

구 분		난방면적 (㎡)	최대열부하 (Mcal/h)	연간열부하 (Gcal/년)	비고
총 계		2,415,475	152,967	217,129	
산업지구 계		1,405,607	95,684	84,294	
산업지구	지원시설용지	251,123	17,455	15,440	
	업무상업시설용지	752,375	53,532	52,083	
	체육지원시설	124,854	9,088	7,506	
	교육연구시설	259,763	14,277	6,767	
	폐수종말처리장	1,101	67	53	
	폐기물처리시설	2,595	184	491	
	집단에너지공급설비	3,499	289	759	
	주유소	10,297	792	1,195	
주거지구 계		1,009,868	57,283	132,835	
주거지구	단독주택	64,137	3,889	10,537	
	공동주택	752,379	40,533	111,210	
	상업용지	82,834	6,545	7,361	
	근린생활시설	12,088	760	875	
	학교	89,442	4,916	2,330	
	공공청사	5,292	368	286	
	종교시설	3,696	272	236	

○ 변경

구 분		난방면적 (㎡)	최대열부하 (Mcal/h)	연간열부하 (Gcal/년)	비고
총 계		2,437,024	147,080	198,287	
산업지구 계		1,430,120	97,302	85,635	
산업지구	지원시설	251,123	17,455	15,440	
	업무상업시설용지	752,375	53,532	52,083	
	유통업무설비	24,513	1,617	1,341	
	체육지원시설	124,854	9,089	7,506	
	교육연구시설	259,763	14,277	6,766	
	폐수종말처리장	1,101	67	53	
	폐기물처리시설	2,595	184	491	
	집단에너지공급설비	3,499	289	760	
	주유소	10,297	792	1,195	
주거지구 계		1,006,904	49,778	112,652	
주거지구	단독주택	64,137	3,813	10,340	
	공동주택	745,786	32,904	91,131	
	상업용지	82,834	6,545	7,360	
	근린생활시설	12,088	760	875	
	학교	93,072	5,116	2,424	
	공공청사	5,292	368	286	
	종교시설	3,696	272	236	

다. 취사용 LNG 수용량(변경)

○ 충청지역 LNG공급업체 (서해도시가스)부터 공급

- 기정 : 3,675천Nm³/년
- 변경 : 3,670천Nm³/년(감 5천Nm³/년)

○ 기 정

구 분		연면적 (㎡)	세대수	원단위 (Mcal/㎡·년) (Mcal/세대·년)	사용량 (Gcal/년)	LNG사용량 (천Nm³/년)	비고
총 계		3,021,688	10,637		37,811	3,675	
산업지구 계		1,758,960			19,242	1,870	
산업지구	지원시설용지	313,904		17.71	5,559	540	
	업무상업시설용지	977,111		10.28	10,045	976	난방면적 기준
	체육지원시설	148,636		2.84	422	41	
	교육연구시설	291,868		10.70	3,123	303	
	폐수종말처리장	1,573		4.20	7	1	
	폐기물처리장	3,707		4.20	16	2	
	집단에너지공급설비	4,999		4.20	21	2	
	주유소	17,162		2.84	49	5	
주거지구 계		1,262,728	10,637		18,569	1,805	
주거지구	단독주택	75,455	567	1,486.80	843	82	전세입주 고려 계획세대수×3
	공동주택	940,474	10,070	1,411.20	14,211	1,381	
	상업용지	118,334		17.71	2,096	204	
	근린생활시설	17,268		17.71	306	30	
	학교	100,497		10.70	1,075	104	
	공공청사	6,300		4.20	26	3	
	종교시설	4,400		2.84	12	1	

○ 변 경

구 분		연면적 (㎡)	세대수	원단위 (Mcal/㎡·년) (Mcal/세대·년)	사용량 (Gcal/년)	LNG사용량 (천Nm³/년)	비고
총 계		3,052,544	10,558		37,749	3,670	
산업지구 계		1,793,979			19,248	1,871	
산업지구	지원시설	313,904		17.71	5,559	540	
	업무상업시설용지	977,111		10.28	10,045	976	난방면적 기준
	유통업무설비	35,019		0.18	6	1	
	체육지원시설	148,636		2.84	422	41	
	교육연구시설	291,868		10.70	3,123	303	
	폐수종말처리장	1,573		4.20	7	1	
	폐기물처리장	3,707		4.20	16	2	
	집단에너지공급설비	4,999		4.20	21	2	
	주유소	17,162		2.84	49	5	
주거지구 계		1,258,565	10,558		18,501	1,799	
주거지구	단독주택	75,455	567	1,486.80	843	82	전세입주 고려 계획세대수×3
	공동주택	932,233	9,991	1,411.20	14,099	1,370	
	상업용지	118,334		17.71	2,096	204	
	근린생활시설	17,268		17.71	306	30	
	학교	104,575		10.70	1,119	109	
	공공청사	6,300		4.20	26	3	
	종교시설	4,400		2.84	12	1	

라. 집단에너지 타당성 검토(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1)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25	80,996	2,170,151	99	38,678	1,066,716	72	33,347	905,190	54	8,971	198,245
	변경	225	80,996	2,170,557	99	38,678	1,066,716	72	33,347	905,190	54	8,971	198,651
광로	기정	1	186	8,549	-	-	-	-	-	-	1	186	8,549
	변경	1	186	8,549	-	-	-	-	-	-	1	186	8,549
대로	기정	43	39,792	1,353,959	6	11,316	475,385	35	26,098	813,482	2	2,378	65,092
	변경	43	39,792	1,354,365	6	11,316	475,385	35	26,098	813,482	2	2,378	65,498
중로	기정	97	29,606	639,776	61	22,539	540,403	19	4,691	69,320	17	2,376	30,053
	변경	97	29,606	639,776	61	22,539	540,403	19	4,691	69,320	17	2,376	30,053
소로	기정	84	11,412	167,867	32	4,823	50,928	18	2,558	22,388	34	4,031	94,551
	변경	84	11,412	167,867	32	4,823	50,928	18	2,558	22,388	34	4,031	94,551

주1) 진입도로 포함(단, 지방도615호선 제외)

주2) 기정 1류 합계면적 고시 오기 정정(1,066,715㎡ → 1,066,716㎡) 및
이에 따른 기정 합계면적 고시 오기 정정(2,170,150㎡ → 2,170,151㎡)

(가) 지구내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21	79,311	2,053,582.9	98	38,480	1,049,822	70	32,046	814,064.9	53	8,785	189,696
	변경	221	79,311	2,053,988.9	98	38,480	1,049,822	70	32,046	814,064.9	53	8,785	190,102
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대로	기정	41	38,910	1,269,490.9	5	11,118	458,491	34	25,414	745,907.9	2	2,378	65,092
	변경	41	38,910	1,269,896.9	5	11,118	458,491	34	25,414	745,907.9	2	2,378	65,498
중로	기정	96	28,989	616,225	61	22,539	540,403	18	4,074	45,769	17	2,376	30,053
	변경	96	28,989	616,225	61	22,539	540,403	18	4,074	45,769	17	2,376	30,053
소로	기정	84	11,412	167,867	32	4,823	50,928	18	2,558	22,388	34	4,031	94,551
	변경	84	11,412	167,867	32	4,823	50,928	18	2,558	22,388	34	4,031	94,551

○ 지구내 도로(산업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지구내 도로(주거지구)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7	33~41	주간선	316	지구북측 구역계 (덩지미골)	대3-2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대로	3	2	25~31	주간선	1,714	대2-37	지구동측 구역계 (지방도615호)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변경	대로	3	2	25~31	주간선	1,714	대2-37	지구동측 구역계 (지방도615호)	일반 도로		'08.06.19	면적변경
기정	중로	1	57	20	보조 간선	830	대2-37	중1-63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58	20~24.5	보조 간선	275	대2-37	중1-57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59	20	보조 간선	533	중1-57	중1-63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0	24.5	보조 간선	368	중1-58	중1-63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1	20	보조 간선	128	중1-57	중1-60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2	20	보조 간선	219	중1-57	중1-59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3	20~24.5	보조 간선	724	대3-2	저류지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4	24.5~29.5	보조 간선	487	대3-2	중1-63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2	16	15	집산 도로	642	대2-37	대2-37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2	17	15	집산 도로	120	중1-57	중1-61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2	18	15	집산 도로	204	중1-57	중1-62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6	12	집산도로	57	대로3-2	지구계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10.04.07	3단계
기정	중로	3	17	12	집산도로	125	중로1-64	지구계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10.04.07	3단계
기정	소로	1	17	10	국지도로	452	소1-19	소1-19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도로	70	소1-17	소1-17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19	10	국지도로	95	중1-57	소1-17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0	10	국지도로	50	소1-17	소1-19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1	10	국지도로	338	소1-22	소1-22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2	10	국지도로	94	중1-57	소1-21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3	10	국지도로	556	소1-24	중1-57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4	10	국지도로	123	중1-57	소1-23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5	10	국지도로	118	소1-23	소1-26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6	10	국지도로	107	소1-24	소1-30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7	10	국지도로	61	소1-25	소1-30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8	10	국지도로	61	소1-25	소1-30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9	10	국지도로	66	소1-25	소1-30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30	10	국지도로	169	중1-57	소1-23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31	10	국지도로	36	소1-23	소1-30	일반도로		'10.03.30	3단계
기정	소로	1	32	10	국지도로	265	중1-57	소1-32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430	대3-2	제1호 배수지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2	18	8~12	국지도로	83	대1-59	주거지구 동측경계	일반도로		'14.11.25	3단계
기정	소로	3	5	3.3~12.4	국지도로	175	대2-37	주거지구 북측경계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67	중2-16	주거지구 북측경계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7	6	특수도로	132	중2-16	제79호 완충녹지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5	소1-17	제75호 경관녹지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15	소1-17	제75호 경관녹지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10	6	특수도로	9	중1-58	소1-17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1	6	특수 도로	11	중1-58	소1-17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12	4~6	국지 도로	34	중1-57	제77호 완충녹지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13	6	특수 도로	5	소1-21	제81호 완충녹지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14	6	특수 도로	6	중1-57	소1-21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15	6	특수 도로	6	중1-57	소1-23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16	6	특수 도로	7	중1-59	소1-23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17	6	특수 도로	9	소1-21	제1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18	6	특수 도로	11	소1-21	제1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3	19	6	특수 도로	10	소1-32	제81호 완충녹지	보행자 전용		'10.03.30	3단계
기정	소로	3	20	6	특수 도로	10	중1-57	소1-32	보행자 전용		'10.03.30	3단계
기정	소로	3	21	6	특수 도로	11	중1-59	소1-23	보행자 전용		'10.03.30	3단계
기정	소로	3	23	6	국지 도로	279	중1-59	중3-17	일반 도로		'10.03.30	3단계
기정	소로	3	24	5	국지 도로	313	중3-16	주거지구 동측경계	일반 도로		'10.03.30	3단계
기정	소로	3	25	5~10	국지 도로	319	소3-26	중3-16	일반 도로		'10.03.30	3단계
기정	소로	3	26	6	국지 도로	25	대3-2	주거지구 남측경계	일반 도로		'10.03.30	3단계
기정	소로	3	27	5	국지 도로	431	소3-26	주거지구 서측경계	일반 도로		'10.03.30	3단계
기정	소로	3	28	6	국지 도로	174	대2-37	주거지구 북측경계	일반 도로		'10.03.30	3단계
기정	소로	3	32	6	국지 도로	15	중1-57	주거지구 동측경계	일반 도로		'13.07.18	3단계
기정	소로	3	33	4	국지 도로	78	제94호 완충녹지	제94호 완충녹지	일반 도로		'15.06.11	3단계

- 지구내 도로(주거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2	대로3-2	· 대로3-2호선 면적 변경 - 면적 증) 406.0㎡	· 대로3-2호선 가감속차로 등 현황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증, 406.0㎡)

(나) 지구외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 게재생략

○ 지구외 진입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녹지(변경)

(가) 녹지 총괄표(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108	873,543.3	증) 1	증) 2,133.6	109	875,676.9
산업지구 소계	81	791,305.6	-	-	81	791,305.6
완충녹지	56	373,971.2	-	-	56	373,971.2
경관녹지	25	417,334.4	-	-	25	417,334.4
주거지구 소계	27	82,237.7	증) 1	증) 2,133.6	28	84,371.3
완충녹지	21	75,128.1	증) 2	증) 3,618.4	23	78,746.5
경관녹지	6	7,109.6	감) 1	감) 1,484.8	5	5,624.8

○ 산업지구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거지구 녹지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구 소계					82,237.7	증) 2,133.6	84,371.3		
기정	71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2014공	830.1	-	830.1	'08.06.19	3단계
기정	72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2016공	727.6	-	727.6	'08.06.19	3단계
기정	73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2019공	2,026.3	-	2,026.3	'08.06.19	3단계
기정	74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2018공	1,917.4	-	1,917.4	'08.06.19	3단계
기정	75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 통정리 2017공	1,222.5	-	1,222.5	'08.06.19	3단계
기정	76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 통정리 2006공	2,014.0	-	2,014.0	'08.06.19	3단계
기정	77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2001공	1,777.2	-	1,777.2	'08.06.19	3단계
기정	78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 통정리 2009공	992.6	-	992.6	'10.03.30	3단계
기정	79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33공 일원	18,257.3	-	18,257.3	'08.06.19	3단계
기정	80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2020공	4,089.7	-	4,089.7	'08.06.19	3단계
기정	81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2022공	2,532.0	-	2,532.0	'08.06.19	3단계
기정	85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 통정리 1960공	1,172.6	-	1,172.6	'08.06.19	3단계
기정	88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 통정리 1990공	223.1	-	223.1	'08.06.19	3단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9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1989공 일원	3,888.1	-	3,888.1	'08.06.19	3단계
기정	94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1983공 일원	7,461.5	-	7,461.5	'08.06.19	3단계
변경	95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51공	3,866.0	감) 26.2	3,839.8	'08.06.19	
변경	96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50공	1,437.9	감) 26.3	1,411.6	'08.06.19	
변경	97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47공	4,034.1	감) 1,128.2	2,905.9	'08.06.19	
기정	98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48공	4,351.5	-	4,351.5	'08.06.19	3단계
기정	99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46공	985.7	-	985.7	'08.06.19	3단계
폐지	100	녹지	경관녹지	고대면 성산리 1644공	1,484.8	감) 1,484.8	-	'08.06.19	
기정	101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43공	242.5	-	242.5	'08.06.19	3단계
변경	102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38공	5,058.5	감) 1,124.9	3,933.6	'08.06.19	
변경	103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40공	6,363.3	감) 191.7	6,171.6	'08.06.19	
변경	104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34공 일원	3,732.7	증) 1,182.6	4,915.3	'08.06.19	
기정	105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35공	613.2	-	613.2	'08.06.19	3단계
기정	108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통정리 2003공	935.5	-	935.5	'08.06.19	3단계
신설	119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27대 일원	-	증) 3,448.3	3,448.3	-	
신설	120	녹지	완충녹지	고대면 성산리 1644공	-	증) 1,484.8	1,484.8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5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축소 - A=3,866.0㎡ → 3,839.8㎡, 감) 26.2㎡	• 인접 공동주택 출입구 보행동선 개선 등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조정
96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축소 - A=1,437.9㎡ → 1,411.6㎡, 감) 26.3㎡	• 인접 공동주택 출입구 보행동선 개선 등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조정
97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축소 - A=4,034.1㎡ → 2,905.9㎡, 감) 1,128.2㎡	• 교육환경평가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조정
100	경관녹지	• 경관녹지 폐지 - A=1,484.8㎡	• 완충녹지로 조정에 따른 경관녹지 폐지
102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축소 - A=5,058.5㎡ → 3,933.6㎡, 감) 1,124.9㎡	• 교육환경평가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조정
103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축소 - A=6,363.3㎡ → 6,171.6㎡, 감) 191.7㎡	• 교육환경평가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조정
104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증가 - A=3,732.7㎡ → 4,915.3㎡, 증) 1,182.6㎡	• 교육환경평가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조정
119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A= 3,448.3㎡	• 교육환경평가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120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A= 1,484.8㎡	• 교육환경평가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다) 공공공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광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가) 유통업무설비(변경)

○ 유통업무설비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유통업무설비	석문면 통정리 1667장 일원	-	증) 50,027.0	50,027.0	-	

○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통업무설비	· 유통업무설비 신설 - A = 50,027.0㎡	· 전문상가단지 등 입지를 위한 유통업무설비 신설

나) 열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전기공급설비(변경)

○ 단위시설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85.7	증) 13,253.0	15,938.7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석문면 삼봉리 2129잡	2,685.7	-	2,685.7	'10.03.30	1단계
신설	3	전기공급설비	석문면 통정리 1620장 일원	-	증) 13,253.0	13,253.0	-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신설 - A = 13,253.0㎡	· 산업단지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한 전기공급설비 신설

○ 간선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학교(변경)

○ 학교시설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0,248.7	증) 2,038.9	52,287.6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석문면 통정리 1732학	12,217.7	-	12,217.7	'08.06.19	3단계
기정	2	학교	중학교	석문면 통정리 1731학	12,921.2	-	12,921.2	'08.06.19	3단계
변경	3	학교	고등학교	고대면 성산리 1629학	12,979.7	증) 174.6	13,154.3	'08.06.19	
기정 변경	4	학교	초등학교	고대면 성산리 1625학 고대면 성산리 1627대 일원	12,130.1	증) 1,864.3	13,994.4	'08.06.19	

○ 학교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학교	고등학교 면적 확대 -A=12,979.7m² → 13,154.3m², 증)174.6m²	교육환경평가 결과 반영 등에 따른 고등학교 면적 조정
4	학교	- 위치 이동 -기정 : 고대면 성산리 1625학 -변경 : 고대면 성산리 1627대 일원 - 초등학교 면적 확대 -A=12,130.1m² → 13,994.4m², 증)1,864.3m²	교육환경평가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초등학교 위치 이동 및 면적 조정

나) 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연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계재생략

나) 근린생활용지(변경없음) : 계재생략

다)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A-1	A-1	24,285.6	24,285.6	석문면 통정리 1725대	24,285.6	24,285.6	필지분할·합병 불허 (단,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은 대지분할 가능)
A-2	A-2	18,628.6	18,628.6	석문면 통정리 1733대	18,628.6	18,628.6	
A-3	A-3	17,389.3	17,389.3	석문면 통정리 1730대	17,389.3	17,389.3	
A-4	A-4	53,696.8	53,749.3	고대면 성산리 1623대	53,696.8	53,749.3	
B-1	B-1	44,242.9	44,242.9	석문면 통정리 1726대	44,242.9	44,242.9	
B-2	B-2	55,451.7	55,451.7	석문면 통정리 1729대	55,451.7	55,451.7	
B-3	B-3	63,099.6	76,357.9	고대면 성산리 1626대	63,099.6	76,357.9	
B-4	B-4	55,649.8	55,649.8	석문면 통정리 1982대	55,649.8	55,649.8	
B-5	B-5	39,510.9	39,510.9	석문면 통정리 1727대	39,510.9	39,510.9	
B-6	B-6	85,598.7	68,914.9	고대면 성산리 1627대	85,598.7	68,914.9	
B-7	B-7	18,869.3	17,663.8	고대면 성산리 1628대	18,869.3	17,663.8	
C-1	C-1	46,062.6	46,062.6	석문면 통정리 1728대	46,062.6	46,062.6	

라)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계재생략

마) 산업시설용지(변경)

○ 일반1 ~ 일반11(변경없음) : 계재생략

○ 일반12 ~ 일반13(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일 반12	1012	245,193.9	-	-1	석문면 통정리 1667장	122,633.4	-	
				-2	석문면 통정리 1666장	122,560.5	-	
일 반13	1013	86,927.2	73,674.2	-1	석문면 통정리 1621장	21,733.7	21,733.7	
				-2	석문면 통정리 1620장	21,732.1	8,479.1	
				-3	석문면 통정리 1623장	21,731.7	21,731.7	
				-4	석문면 통정리 1622장	21,729.7	21,729.7	

○ 일반14 ~ 일반36(변경없음) : 계재생략

○ 첨단(변경없음) : 계재생략

○ 물류(신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물류1	3001	-	195,166.9	-1	석문면 통정리 1667장 일원	-	49,935.2	
				-2	석문면 통정리 1666장 일원	-	145,231.7	

바)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교육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초1	-	12,217.7	12,217.7	석문면 통정리 1732학	12,217.7	12,217.7	
초2	-	12,130.1	13,994.4	고대면 성산리 1625학 → 고대면 성산리 1627대 일원	12,130.1	13,994.4	
중1	-	12,921.2	12,921.2	석문면 통정리 1731학	12,921.2	12,921.2	
고1	-	12,979.7	13,154.3	고대면 성산리 1629학 일원	12,979.7	13,154.3	
교육1	-	331,748.4	331,748.4	석문면 삼봉리 2241학	331,748.4	331,748.4	필지분할 및 합병 가능
교육2	-	33,086.0	33,086.0	석문면 삼봉리 2241학	33,086.0	33,086.0	

아) 주유소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오수중계펌프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폐수종말처리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 폐기물매립 및 소각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하) 배수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거) 유통업무설비용지(신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²)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m²)			
					기정	변경		
유통1	-	-	50,027.0	석문면 통정리 1667장 일원		-	50,027.0	

너)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더) 배수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러) 전기공급설비(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²)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m²)		
					기정	변경	
전1	-	2,685.7	2,685.7	석문면 삼봉리 2129잡	2,685.7	2,685.7	
전2	-	256.0	256.0	석문면 삼봉리 2128잡	256.0	256.0	
전3	-	-	13,253.0	석문면 통정리 1620장 일원	-	13,253.0	

- 머)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계재생략
 버)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 계재생략
 서) 유수시설용지(변경없음) : 계재생략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계재생략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계재생략
 다)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계재생략

○ 별표1 공동주택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변경)

필지 번호	주택규모	필지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 평형 (㎡)	최고 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기정	합 계	522,485.8	10,070	27,568	-	-	-	-	-
변경		517,907.3	9,991	27,347	-	-	-	-	-
A-1	60㎡이하	24,285.6	673	1,884	66.1	-	30	180	국민임대
A-2	60㎡이하	18,628.6	518	1,450	66.1	-	30	180	국민임대
A-3	60㎡이하	17,389.3	696	1,322	45.0	-	30	180	행복주택
A-4	기정	60㎡이하	1,465	4,102	66.1	-	30	180	국민임대
	변경	60㎡이하	1,465	4,102	66.1	-	30	180	
B-1	60㎡초과~85㎡이하	44,242.9	739	2,069	107.8	-	30	180	
B-2	60㎡초과~85㎡이하	55,451.7	926	2,593	107.8	-	30	180	
B-3	기정	60㎡초과~85㎡이하	1,054	2,951	107.8	-	30	180	
	변경	60㎡초과~85㎡이하	1,275	3,570	107.8	-	30	180	
B-4	60㎡초과~85㎡이하	55,649.8	933	2,612	107.8	-	30	180	
B-5	60㎡초과~85㎡이하	39,510.9	656	1,837	107.8	-	30	180	
B-6	기정	60㎡초과~85㎡이하	1,430	4,004	107.8	-	30	180	
	변경	60㎡초과~85㎡이하	1,151	3,223	107.8	-	30	180	
B-7	기정	60㎡초과~85㎡이하	316	885	107.8	-	30	180	
	변경	60㎡초과~85㎡이하	295	826	107.8	-	30	180	
C-1	85㎡초과	46,062.6	664	1,859	125.0	-	30	180	

주1)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이며,

주2)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정을 위하여 임의로 설정한 것임

- 라)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계재생략

마) 산업시설용지(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 통	일반1~ 일반14 일반18~ 일반35 첨단1~ 첨단17 첨단20~ 첨단36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단, 지식산업센터는 350% 이하)
		높 이		-
		배 치 및 건 축 선		• 지침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도로로부터 1.5m,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형 태 및 외 관	• 건축물의 외벽에는 아래의 규제재질을 불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 아래의 권장재질을 70%이상 사용할 경우 - 산업의 특성상 규제재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이때 가로 및 녹지변으로는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난연 또는 불연자재만 사용 가능하며, 칼라무늬패널 등을 사용하여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 분	재 질
			규제재질	• 합판, 베니어판, 비닐판자벽 • 페인트 등이 벗겨질 수 있는 재질
			권장재질	• 반사율이 낮은 유리, 벽돌, 목재
			• 담 장 - 담장은 높이 1.5m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안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담장의 높이 및 종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넝쿨식물 식재 등을 이용하여 가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국가보안시설의 경우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일반36에 한함)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아래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단,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권장재질을 70%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색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조색은 원색과 가까운 색 사용을 금지하며 산업용지 별로 다음과 같은 색을 사용한다. 일반산업용지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첨단산업용지 : 시원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일 경우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한다. -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高明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일반 1~14, 18~32, 일반 33-1~3, 33-5~8, 일반 34~35	일반 1~14, 18~32, 일반 33-1~3, 33-5~8, 일반 34~35	허용 용도	주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부수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내)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일반 33-4	일반 33-4	허용 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의한 연료전지 설비에 한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의한 연료전지 설비에 한함)						
			부수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내)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일반36	일반36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지침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도로로부터 1.5m,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에는 아래의 규제재질을 불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 아래의 권장재질을 70%이상 사용할 경우 - 산업의 특성상 규제재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이때 가로 및 녹지면으로는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 샌드위치 판넬의 경우 난연 또는 불연자재만 사용 가능하며, 칼라무늬판넬 등을 사용하여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table><tr><th>구 분</th><th>재 질</th></tr><tr><td>규제재질</td><td> - 합판, 베니어판, 비닐판자벽 - 페인트 등이 벗겨질 수 있는 재질 </td></tr><tr><td>권장재질</td><td> - 반사율이 낮은 유리, 벽돌, 목재 </td></tr></table>		구 분	재 질	규제재질	- 합판, 베니어판, 비닐판자벽 - 페인트 등이 벗겨질 수 있는 재질	권장재질	반사율이 낮은 유리, 벽돌, 목재
			구 분	재 질						
		규제재질	- 합판, 베니어판, 비닐판자벽 - 페인트 등이 벗겨질 수 있는 재질							
		권장재질	반사율이 낮은 유리, 벽돌, 목재							
		- 담장 - 담장은 높이 1.5m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안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담장의 높이 및 종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넝쿨식물 식재 등을 이용하여 가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국가보안시설의 경우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일반36에 한함)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아래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단,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권장재질을 70%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색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조색은 원색과 가까운 색 사용을 금지하며,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을 사용한다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이 없고 보조 색이 여러개일 경우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한다. -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高明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허용 용도	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부수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내)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첨단 1~17	첨단 1~17	허용 용도	주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또는 지식산업센터						
			부수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내)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첨단 20~36	첨단 20~36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 통	일반 1~11 일반 13~14 일반 18~35 첨단 1~17 첨단 20~36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단, 지식산업센터는 350% 이하)
		높 이		-
		배 치 및 건 축 선		• 지침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도로로부터 1.5m,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형 태 및 외 관	• 건축물의 외벽에는 아래의 규제재질을 불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 아래의 권장재질을 70%이상 사용할 경우 - 산업의 특성상 규제재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이때 가로 및 녹지변으로는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 샌드위치 판넬의 경우 난연 또는 불연자재만 사용 가능하며, 칼라무늬판넬 등을 사용하여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 분	재 질
			규제재질	• 합판, 베니어판, 비닐판자벽 • 페인트 등이 벗겨질 수 있는 재질 • 권장재질 • 반사율이 낮은 유리, 벽돌, 목재
		• 담장 - 담장은 높이 1.5m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안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담장의 높이 및 종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넝쿨식물 식재 등을 이용하여 가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국가보안시설의 경우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일반36에 한함)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아래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단,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권장재질을 70%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색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조색은 원색과 가까운 색 사용을 금지하며 산업용지 별로 다음과 같은 색을 사용한다. 일반산업용지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첨단산업용지 : 시원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이 없고 보조 색이 여러개일 경우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한다. -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高明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허용 용도	주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부수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내)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일반 33-4	일반 33-4	허용 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의한 연료전지 설비에 한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의한 연료전지 설비에 한함)					
			부수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내)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일반36	일반36	건 폐율		• 70% 이하					
		용 적률		• 250% 이하					
		높 이		-					
		배치 및 건축선		• 지침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도로로부터 1.5m,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에는 아래의 규제재질을 불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 아래의 권장재질을 70%이상 사용할 경우 - 산업의 특성상 규제재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이때 가로 및 녹지변으로는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 샌드위치 판넬의 경우 난연 또는 불연자재만 사용 가능하며, 칼라무늬판넬 등을 사용하여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 분	재 질	규제재질	• 합판, 베니어판, 비닐판자벽 • 페인트 등이 벗겨질 수 있는 재질	권장재질	• 반사율이 낮은 유리, 벽돌, 목재
				구 분	재 질				
		규제재질	• 합판, 베니어판, 비닐판자벽 • 페인트 등이 벗겨질 수 있는 재질						
		권장재질	• 반사율이 낮은 유리, 벽돌, 목재						
		• 담장 - 담장은 높이 1.5m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안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담장의 높이 및 종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넝쿨식물 식재 등을 이용하여 가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국가보안시설의 경우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일반36에 한함)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아래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단,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권장재질을 70%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색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조색은 원색과 가까운 색 사용을 금지하며,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을 사용한다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이 없고 보조 색이 여러개일 경우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한다. -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高明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허용 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부수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내)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첨단 1~17	첨단 1~17	허용 용도	주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또는 지식산업센터					
			부수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내)					
첨단 20~36	첨단 20~36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바) 산업시설용지 중 물류시설용지(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물류1 (신설)	물류1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단, 지식산업센터는 350% 이하)						
		높 이	-						
		배 치 및 건축 선	• 지침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도로로부터 1.5m,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유통업무설비 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에 따른 대지내 공지에는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형 태 및 외 관	• 건축물의 외벽에는 아래의 규제재질을 불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 아래의 권장재질을 70%이상 사용할 경우 - 산업의 특성상 규제재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이때 가로 및 녹지변으로는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 샌드위치 판넬의 경우 난연 또는 불연자재만 사용 가능하며, 칼라무늬판넬 등을 사용하여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table><tr><td>구 분</td><td>재 질</td></tr><tr><td>규제재질</td><td>• 합판, 베니어판, 비닐판자벽 • 페인트 등이 벗겨질 수 있는 재질</td></tr><tr><td>권장재질</td><td>• 반사율이 낮은 유리, 벽돌, 목재</td></tr></table> • 담장 - 담장은 높이 1.5m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안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담장의 높이 및 종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넝쿨식물 식재 등을 이용하여 가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국가보안시설의 경우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일반36에 한함)	구 분	재 질	규제재질	• 합판, 베니어판, 비닐판자벽 • 페인트 등이 벗겨질 수 있는 재질	권장재질	• 반사율이 낮은 유리, 벽돌, 목재
		구 분	재 질						
		규제재질	• 합판, 베니어판, 비닐판자벽 • 페인트 등이 벗겨질 수 있는 재질						
		권장재질	• 반사율이 낮은 유리, 벽돌, 목재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아래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단,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권장재질을 70%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색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조색은 원색과 가까운 색 사용을 금지하며 산업용지 별로 다음과 같은 색을 사용한다. 일반산업용지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첨단산업용지 : 시원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이 없고 보조 색이 여러개일 경우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한다. -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高明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허용 용도	주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의2호에 따른 물류창고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집배송시설					
부수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내)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 기타시설용지(변경)

○ 공통, 초1~초2, 중1, 고1, 교육1, 교육2, 주1~주19, 주24, 주20~주23(변경없음) : 게재생략

○ 지원시설용지

- 지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1 ~지원5	지원1 ~지원5	허용 용도	• 준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회의장·전시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정비공장, 운동시설 (관람석이 없는 시설에 한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불허 용도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 옥외 철타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1 ~지원5	지원1 ~지원5	허용 용도	• 준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회의장·전시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정비공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운동시설(관람석이 없는 시설에 한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불허 용도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 옥외 철타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 유1~유5, 청1, 중1, 중2, 체1, 체2, 체3, 오1, 오2, 폐수1, 폐1, 집1, 배1, 배수1, 전1, 전2, 유수1(변경없음) : 게재생략

○ 전기공급설비(전3, 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전3 (신설)	전3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의한 전기공급설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 지침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도로로부터 1.5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유통업무설비(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유통1 (신설)	유통1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에 의한 유통업무설비(제2호 가목 (1)호의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 지침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도로로부터 1.5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물류시설용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에 따른 대지내 공지에는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 별표3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별표4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차폐조경, 공공조경 조성기준(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석문국가산업단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12,011,613.4	-	12,011,613.4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당진시 기업지원과(041-350-4576)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고시 토지이용(<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